

# 審 査 報 告 書

2007. 3. 28.

행 정 위 원 회

##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15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7.3.26.)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배상필)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를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신설
  - 별정직 6급 상당 2명 신설
- 정원 조례 제2조 변경
  - 집행기관의 정수 : 1,279명 → 1,277명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 29명 (+2명)
- 혁신기획단 정원 기간연장
  - 2007년 6월 30일 → 2008년 6월 30일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김완섭)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능직 직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기능직 정원기준이 총 정원의 20%이나, 우리 구 기능직 정원은 25.5%로 5.5% 정원 초과 되어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구 본청에 일반직 18명(조무원 6명, 주차단속 7명, 운전원 6명, 집배원 1)과 구의회사무국에 별정직 2명을 증원하는 것임.

#### - 별정직의 인력 증원은

2006년 6월 29일 개정공포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 2명을 신설하고 별정직 장기근속자 승진적체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8급 상당 1명, 7급 상당 1명을 줄여 6급 상당 2명을 증원하여 상계 조정하되, 조정되는 해당직렬 만큼 하위 직급을 감축하려는 내용이며,

#### - 혁신기획단의 정원 기간연장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5년 12월 22일 조례 제613호 부칙 제2조 중 “혁신기획단 설치에 따른 인력” 2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審査結果 : 原案 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를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신설

- 별정직 6급상당 2명 신설

나. 정원조례 제2조 변경

- 집행기관의 정수 : 1,279명 → 1,277명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 29명 (+2명)

다. 혁신기획단 정원 기간연장

- 2007년 6월 30일 → 2008년 6월 30일

라. 직급별 정원조정

< 증원내역 >

- 일반직 : 총 18명
  - 9급 : +18명
  - 증가내역 : 사회복지직 10, 보건직 2, 지적직 2, 전산직 1, 통신기술1, 녹지(조경) 2
  - 사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복지 및 지역 보건서비스 향상 등 현안 업무 추진으로 증원
- 별정직 : 총 2명
  - 6급상당 : +4명 (구본청 +2, 구의회 +2)

- 7급상당 : -1명 (구본청 -2, 구의회 +1)
- 8급상당 : -1명 (구의회 -1)
- 사 유 : 지방의회 전문위원 6급 2명 신설 및 별정직 장기  
근속자 정원 상향 조정

< 감소내역 >

○ 기능직 : 총 20명

- 10급 : -20명

- 내 역 : 조무원 6, 주차단속 7, 운전원 6, 집배원 1

- 사 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능직 직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기능직 정원기준이 총 정원의 20%이나, 우리구 기능직 정원은 25.5%로 5.5% 정원 초과
- 기능직 10급 정원이 176명이고 현원이 69명으로 현재 107명이 결원 상태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210호(2007.2.26)
- 서울시 조직담당관-2233호(2007.3.6)
-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 조치완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07. 3. 12 ~ 3. 19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279명”을 “1,277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 “27명”을 “29명”으로 한다.

제3조중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총계란중 구분청 “973(6)”을 “971(6)”으로 하고, 구의회사무국 “27”을 “29”로 한다.

일반직 계란중 총계 “960(6)”을 “978(6)”으로, 구분청 “653(6)”을 “669(6)”으로, 보건소 “81”을 “83”으로 한다.

일반직 9급란중 총계 “123”을 “141”로, 구분청 “77”을 “93”으로 하고, 보건소 “7”을 “9”로 한다.

별정직 계란중 총계 “12”를 “14”로, 구의회사무국 “6”을 “8”로 한다.

별정직 6급상당란중 총계 “1”을 “5”로, 구분청 “1”을 “3”으로, 구의회사무국 “2”를 신설한다.

별정직 7급상당란중 총계 “7”을 “6”으로, 구분청 “5”를 “3”으로, 구의회사무국 “2”를 “3”으로 한다.

별정직 8급상당란중 총계 “3”을 “2”로, 구의회사무국 “3”을 “2”로 한다.

기능직 계란중 총계 “333”을 “313”으로, 구분청 “313”을 “295”로, 보건소 “13”을 “11”로 한다.

기능10급란중 총계 “176”을 “156”으로, 구분청 “164”를 “146”으로, 보건소 “8”을 “6”으로 한다.

※ ( )는 한시정원으로 본 정원에 포함한 숫자임

조례 제6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정원)중 “2007년 6월30일”을 “2008년 6월30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06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279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7명</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조례 제613호)</p> <p>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한시정원) -----</p> <p>-----, 2명(혁신기획단 설치에 따른 인력)에 대하여는 <u>2007년 6월 30일까지</u> 한시정원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277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9명</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조례 제613호)</p> <p>제1조(시행일)-----</p> <p>-----</p> <p>제2조(한시정원)-----</p> <p>-----</p> <p>-----, 2명(혁신기획단 설치에 따른 인력)에 대하여는 <u>2007년 6월 30일까지</u> 한시정원으로 한다.</p> <p>----- <u>2008년 6월 30일까지</u> ----- .</p>

##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총 계	1,306(6)	1,306(6)	973(6)	971(6)	27	29	94	94	212	212
정무직 계	1	1	1	1						
구청장	1	1	1	1						
일반직 계	960(6)	978(6)	653(6)	669(6)	14	14	81	83	212	212
3급	1	1	1	1						
4급	7	7	5	5	1	1	1	1		
5급	60	60	26	26	2	2	10	10	22	22
6급	186(1)	186(1)	124(1)	124(1)	3	3	15	15	44	44
7급	273(3)	273(3)	200(3)	200(3)	4	4	25	25	44	44
8급	310(2)	310(2)	220(2)	220(2)	2	2	23	23	65	65
9급	123	141	77	93	2	2	7	9	37	37
별정직 계	12	14	6	6	6	8				
6급상당	1	5	1	3		2				
7급상당	7	6	5	3	2	3				
8급상당	3	2			3	2				
9급상당	1	1			1	1				
기능직 계	333	313	313	295	7	7	13	11		
기능6급	8	8	8	8						
기능7급	18	18	18	18						
기능8급	44	44	42	42			2	2		
기능9급	87	87	81	81	3	3	3	3		
기능10급	176	156	164	146	4	4	8	6		

※ ( )는 한시정원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관리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06(6)	971(6)	29	94	21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78(6)	669(6)	14	83	212
3급	1	1			
4급	7	5	1	1	
5급	60	26	2	10	22
6급	186(1)	124(1)	3	15	44
7급	273(3)	200(3)	4	25	44
8급	310(2)	220(2)	2	23	65
9급	141	93	2	9	37
별정직 계	14	6	8		
6급상당	5	3	2		
7급상당	6	3	3		
8급상당	2		2		
9급상당	1		1		
기능직 계	313	295	7	11	
기능6급	8	8			
기능7급	18	18			
기능8급	44	42		2	
기능9급	87	81	3	3	
기능10급	156	146	4	6	